

#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b>선 람</b>	<b>기 관 의 장</b>



**제 565호 2016. 9. 23(금)**

## 조 례

남해군조례 제218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183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남해군조례 제2184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10
남해군조례 제2185호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남해군조례 제2186호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남해군조례 제218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남해군조례 제2188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남해군조례 제2189호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남해군조례 제2190호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	24
남해군조례 제2191호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0
남해군조례 제2192호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32
남해군조례 제2193호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5
남해군조례 제219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남해군조례 제2195호	남해군의 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규 칙

남해군규칙 제11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2
남해군규칙 제1107호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43
남해군규칙 제1108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1
남해군규칙 제1109호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9

## 고 시

제2016 - 71호	도로명 주소 고시	62
제2016 - 7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5
제2016 - 7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66
제2016 - 75호	남해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고시	67
제2016 - 7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71

## 공 고

제2016 - 639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 신고사항 공고 .....	72
제2016 - 642호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3
제2016 - 657호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0
제2016 - 659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6
제2016 - 660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93
제2016 - 667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99
제2016 - 668호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04
제2016 - 680호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112
제2016 - 685호	2016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	118
제2016 - 697호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1
제2016 - 704호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7
제2016 - 712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	134
제2016 - 722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5
제2016 - 723호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2
제2016 - 724호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0
제2016 - 729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7
제2016 - 732호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66
제2016 - 735호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1
제2016 - 738호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 .....	179

## 알 림

상하수도사업소공고	제2016-18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4
상하수도사업소공고	제2016-19호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9

회 략									
-----	--	--	--	--	--	--	--	--	--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182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모가” 를 “부 또는 모가”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1개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전입세대 팸투어,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을 “전입세대 주민  
세 지원” 으로, “창업농 지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을 “창업농 지원”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한다” 를 “하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예규 제28호)의 별지 제1호 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로 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인구증대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구분	시책명	적용기준	지원내용	담당부서
출산장려시책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의 자녀 (필요시 2회 이상 분할 지급)	첫째아이 30만원 지급 둘째아이 1백만원 지급 셋째아이 이상 3백만원 지급	주민복지실
	고등학생 학비지원	조례 제3조 제3호 중 군내에 부모와 셋째 자녀 이상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거 지원받는 자는 제외	해당학생 학교 수업료 전액 지급	행정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부 또는 모가 계속 해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출생일 다음달부터 취학 전 (만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범위 안에서 지급	주민복지실
	신생아 무료예방접종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가 출산한 신생아	국가예방접종사업 시행지침에 준하여 시행	보건소
전입세대 정착지원	전입지원금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타 시·군·구에서 2인 이상이 전입한 세대	2인 이상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민원봉사과
	고등학생 학비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 중 타 시·군·구에서 군내로 2인 이상이 전입하여 군내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 온 학생, 단 다른 법령·조례 등에 의거 지원받는 자는 제외	해당학생 학교 수업료 전액 지급	행정과
	전입대학생 지원	조례 제3조 제4호 해당 대학생 단 재학 중 학기별 1회(총 4회)	학기별 학자금 지원 10만원 (최대 40만원)	행정과

# 남 해 군 공 보

(4) 제 565 호

2016년 9월 23일

구 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전입 세대 정착 지원	전입학생 지원	조례 제3조제6호 해당 학생	지원금(재학 중 1회) ·중학생 : 10만원 ·고등학생 : 10만원	행정과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조례 제3조제5호 해당 군인(의무경찰 포함), 단 전역 시까지 1회 지급 원칙	휴가비 지원 1회 20만원	행정과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조례 제3조제2호의 타 사 군구에서 2인 이상이 전 입한 세대	개인균등분주민세 2년간 지원 (부과액 기준)	재무과
	주택수리비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해당자 가 빈집을 매입임대하여 수선 또는 철거한 세대	세대당 20만원 지원 <b>(단, 빈집정비사업교부결정 된 보조사업자에 한함)</b>	도시건축과
	빈집정보공개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빈집 정보	군 홈페이지 게시 (생활정보- 전입지원정보-빈집정보)로 빈집정보 제공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정밀상담 및 안내	도시건축과
	창업농 지원	타 사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한 세대로 농지 를 1천 제곱미터 이상 소 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 계약을 체결하 여 경작하는 사람	<b>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알선</b> (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영농여건 과 계획서를 검토하여 2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융자 지원 알선) <b>2.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우선 알선(읍면)</b> (농지나 축사 등 영농 기반이 없거나 뚜렷한 영농 정착의지 로 시책지원을 희망하는 세대) <b>3. 과수 및 채소류 등 식재용 묘목 무상 지원</b> - 과수류 : 과원 조성을 희망 하는 농가에 대하여 20만 원의 범위 안에서 현물(묘 목) 지원 - 채소류 : 희망하는 농가에 한하여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농축산과

구 분	시 책 명	적 용 기 준	지 원 내 용	담당부서
전입 세대 정착 지원			현물(모종) 지원 4. 각종영농자재 무상지원 - 영농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한농가당 20만원의 범위 안에서 현물 지원	
	주차장이용권 제공	조례 제3조 제2호 해당자	전입세대당 1대분 50매 지급 (500원/1매)	건설교통과
	공공시설 이용 우대 지원	조례 제3조 제1호 해당자 중 3자녀이상 출산한 가정 과 같은 조 제2호 해당자 - <b>우대이용시설 : 노량거북선</b>	공공시설우대인증카드 세대 당1매 제공 - 할인 또는 무료이용 - 우대기간: 2년	행정과
	쓰레기봉투 지원	조례 제3조 제2호 해당자	세대당 50리터 20매 지급	환경녹지과







남해군 조례 제2183호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및 대여료

시설명	구 분	기 준	사용료
샤워장	소 인	1회	1,000원
	대 인	1회	2,000원
야영장	텐트형	1일 (종량제봉투20ℓ 포함)	8,000원
	천막형		13,000원
주차장			무료

※ 소인 : 7세 이상 ~ 12세 이하 (6세 이하 무료)

대인 : 13세 이상

□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 (면적)	사용료	비 고
텐트사이트	1개소 당	캠핑카 20,000원	종량제봉투 20ℓ 포함
		카라반 30,000원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2:00 기준이며, 퇴장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5,000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 1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운영기간 : 매년 1~6월, 9월~12월 [해수욕장 개장시기 7월 ~ 8월(2개월)은 제외]

\* (정의) 캠핑카: 캠핑시설 차량일체형, 카라반: 캠핑시설 차량 분리형

남해군 조례 제2184호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위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문을” 을 “심의”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문을” 을 “심의”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를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별표 1에서 별표 24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85호

##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19세이상 주민 200명 이상” 을 “19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86호

##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단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팀장은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겸직한다.

제14조제3항 중 “자료” 를 “사람으로” 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8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8명” 을 “569명” 으로, “각호와” 를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55명” 을 “556명” 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남해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표

계급	직렬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보건소	농업기 술센터			
계	합계	569	283	13	61	43	25	18	126
	일반직	543	280	13	61	20	25	18	126
6급	합계	131	66	4	9	7	6	5	34
6급	행정	27	21	3			2	1	0
6급	행정+사회복지	4	4						0
6급	행정+사회복지+ 전산	4							4
6급	행정+세무+사회 복지	2	1					1	
6급	행정+농업	12	1			3			8
6급	행정+세무+농업	3						1	2
6급	행정+사회복지+ 보건	6	2						4
6급	행정+사회복지+ 농업	1							1
6급	행정+농업+시설	7	1					1	5
6급	사무운영	1	1						
6급	행정+농업+공업	2	1				1		
7급	합계	164	83	3	32	2	9	6	29
7급	해양수산	7	7						
7급	선박항해운영	0	0						
8급	합계	136	77	2	14	5	8	4	26
8급	사회복지	12	5					1	6
8급	행정+사회복지	5	2					1	2
8급	전산+방송통신	2	2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직급 별 기관 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 업 소	읍·면
				보 건 소	농업 기술센터		
총 계	569						
정무직 계	1						
일반직 계	543						
4급	1	1					
45급	3	2		1			
5급	31	11	3	1	4	2	10
6급이하 소계	507						
전문경력관	1						
별정직	1						
기록연구사	1						
농촌지도사	23						

남해군 조례 제2188호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 등의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06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간사는 경리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심의요청 등)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넘겨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을 회부받은 때에는 회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설공사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 전문건설(전기·소방 포함)공사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①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를 관할하는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군수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사구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공사량이 많은 지역의 이장 또는 이장이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비는 별표와 같다.

제15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등 위원의 발언요지
4. 의결사항
5. 그 밖의 중요 사항 등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추정가격 3천만원이상인” 를 “「남해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으로 한다.

**【별표】**

실비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금액(원)	비고
계약심의위원회	수 당	100,000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자 문 비	200,000	
	여 비	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 공무원여비규정
주민참여감독자	수 당	20,000	1회당 20,000원, 월 4회 이내 지급

남해군 조례 제2189호

###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여 남해군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보조지원)”을 “(새마을사업 지원)”으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사업  
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  
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경비
4. 새마을운동의 해외협력사업을 위한 경비
5.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중 “가입”을 “가입하게”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예우)” 를 “(사기진작)” 으로 한다.  
제6조 중 “지원절차” 를 “지원 절차” 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90호

###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공인의 글씨 및 규격)”을 “(공인의 글자 및 규격)”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크기는 별표 1에 따른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회계 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중 “현재”를 “현재의”로, “인명부에 의하여”를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안이 유지되도록”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이를 공보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의 제목 “(공인의 폐기)”를 “(공인의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을”을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고, “영구히”를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로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공인관수자)”를 “(공인 관수자)”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공인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의 제목 “(관수방법)”을 “(보관방법)”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공인의 관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기관 명칭의 글자가 공인” 을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 으로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의 크기(제4조 관련)

공 인 의 구 분	규 격
1. 군수의 직인	2.4cm 정사각형
2.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군수 보조기관, 하부기관의 장 포함) 가.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2.1cm 정사각형
나.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8cm 정사각형
3.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 직인	1.6cm 정사각형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2.0cm 정사각형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2.0cm 정사각형
나. 출납원 및 분임자	1.8cm 정사각형
5. 청인(합의제기관, 자문기관 등)	3.6cm 정사각형

[별표 2]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제13조 관련)

공인의 종류	관 수 자
군수 직인	행정과장
전자이미지 공인	행정과장
민원실전용 공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	문서(서무)업무담당의 장
소속기관의 장의 보조기관의 직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소관업무담당의 장
청인(의결기관 지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	소관업무담당의 장

[별지 제6호 서식]

#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신 : 행정과장 앞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전말	
5. 기 타	

남해군 조례 제2191호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바래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문화·생태 등이 조화를 이루는 남해바래길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남해바래길"(이하 "바래길" 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자연, 생태, 문화 등을 보고 체험하며 옛 선인들의 삶의 정신을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조성된 도보 여행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최대한 본래의 길을 바탕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조성하되,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
2. 바래길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조성한다.
3.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으로 추진한다.

제4조(바래길 지정) ① 군수는 남해군의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과 도로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구간별로 구분하여 바래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바래길의 구간별 위치, 명칭 등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가 바래길을 지정할 때에는 인근 주민, 관련 법인·단체, 걷기 전문가, 행



정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바래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래길 유지·보수 및 새로운 코스의 개발
2. 탐방안내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운영
3. 바래길의 역사·문화, 생태·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4. 생태·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축제 등 군민과 탐방객의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바래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바래길 탐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바래길 이용정보 안내 및 탐방객의 여행 편의 제공을 위하여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이하 “탐방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기능) 탐방안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래길 홍보 및 이용 정보 안내
2. 탐방객에 대한 바래길 안내 및 여행편의 제공
3. 그 밖의 바래길 관리·운영 지원

제8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탐방안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탐방안내센터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92호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해군 보물섬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물섬 800리길"(이하 "800리길" 이라 한다)이란 남해군의 해안선을 따라 조성되어 아름다운 바다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해안 일주도로를 말한다.
2. "800리길 조성사업"이란 800리길과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자원 개발과 간이역 조성 사업 등으로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융·복합 관광 자원화 사업을 말한다.
3. "간이역 조성사업"이란 800리길이 지나가는 주요 지점에 지역특산물 판매, 관광, 휴식, 전망, 주차 등이 가능한 복합시설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조성 및 관리) ① 군수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1. 체계적인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800리길 구간 연결 및 정비사업
2. 800리길과 연계한 농촌개발 및 관광 자원화 사업
3.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간이역 조성사업

4. 각종 대회·행사 개최 등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800리길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물섬 800리길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800리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800리길 조성 및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간이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3. 800리길 홍보 및 군민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위촉직 및 당연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은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해군의회의원

2.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3. 관광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축수산물 유통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800리길 조성 및 관리사업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건강상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800리길 조성 및 관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93호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내체육관,” 을 “실내체육관(족구장 포함),” 으로, “수영장, 풋살구장” 을 “풋살구장” 으로,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문화체육센터 풋살구장, 실내체육관 족구장” 을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금해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을 “경비교도대원 및 사회복지무요원” 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공설” 을 “트랙이 설치된 읍·면 공설” 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트랙이 설치된 공설운동장의 경우 군민” 을 “군민”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체육시설 사용료, 야외공연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를 “사용료는 체육시설, 야외공연장, 부대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지훈련에만” 을 “전지훈련 시” 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남해군 인조잔디구장을 장애인, 노인, 군인이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장애인, 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을 “청소년, 어린이” 로 한다.

제13조제3항은 삭제한다.

제1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4항” 을 “제1항부터 제5항” 으로 한다.

⑤ 군수는 군민이 행사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파크 내 야구장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부가가치세 포함)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스포츠파크	주경기장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보조구장 (천연잔디)	필드	"	220,000	275,000		
		인조잔디 구장	필드	"	77,000	110,000	
	야구장	인조구장	"	132,000	165,000		
		야간조명	"	110,000	110,000		
	풋살 경기장	필드	"	22,000	33,000		
	테니스장	코트	1회 3시간/1면	11,000	16,500		
공설운동장	남해읍 (천연잔디)	필드	1일 1회 3시간내	330,000	385,000		
		트랙	"	무료	무료		
실내체육관	다목적경기장	체육경기	1회/3시간	110,000	165,000		
		체육이외	1회/3시간	220,000	330,000		
		냉·난방시설	"	110,000	110,000		
	복싱장	-	-	무료	무료		
		스포츠댄스장	-	-	무료	무료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220,000	275,000		
	인조잔디구장	필드	1일 1회 3시간내	77,000	110,000		

남해군 조례 제2194호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해지하고” 를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로 한다.

제25조 중 “을 준용한다.” 를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 로 한다.

제26조제4호 중 “도지사 또는 군수” 를 “도지사” 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을 “대부한”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조항 중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다.” 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를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로 한다.

제6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95호

**남해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명 “남해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남해군의  
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  
로,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제2조제4호 중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 칙**

남해군 규칙 제1106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규칙 제1107호

###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자격) ① 이장은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사명감이 투철하여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행정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심판을 받은 사람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읍·면장으로부터 직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그 밖에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임명) ① 이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개발위원장이 읍·면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재임명을 받아야 한다.

③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장선출에 대한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읍·면장은 추천서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2조제2항에 해당하여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리에 재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이장임명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직권면직) ① 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행정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할 때
4. 해당 행정리에서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불신임으로 교체요청이 있을 때. 단,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면직된 경우 읍·면장은 해당 마을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 ① 이장의 임기는 해당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마을총회에서 선임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구비서류) 제3조제1항에 따라 이장에 임명된 사람은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추천서 1부
3. 승낙서 1부

제7조(확인서 발급) 읍·면장은 이장이 요청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재직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다른 직의 겸직 금지) 이장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등의 직원이 되거나 상임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 추천서

## 1. 추천 받은 사람 인적사항

구 분	성명 (한자)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직업	학력	주요경력
				등록기준지			
추천 받은사람							

## 2. 마을총회 개최현황

- 가. 일 시 :
- 나. 장 소 :
- 라. 회의결과 :

상기자를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였기에 ○○마을 이장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마을명 :

직 위 : 개발위원장 성명 (인)

- 붙 임 1. 마을총회 회의록 사본 1부.
- 2. 추천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끝.

○○면장 귀하



(뒷면)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면 ○○마을 이장 임명에 있어 「남해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 동의 및 정보 : 신원기록사항(민감정보)</li> </ul> </li> <li>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이장 임명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년 월 일  
성명 (서명)

### ■ 본인 동의

구 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 인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승 낙 서

소 속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상기 본인은 ○○면 ○○리 ○○마을 이장 임명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마을명 :

직 위 :                   성명           (인)

○○면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이 장 임 명 카 드				마을명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사진)	성 별	남 / 여		학 력	
	주 소				
	전화번호	자택 ( ) / 휴대폰 ( )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직장	비 고
학 력	기 간		학 교 명	학 위	
	부 터	까 지			
주 요 경 력	기 간		근무처(활동단체명)	직 위	
	부 터	까 지			
임 면 사 항	년 월 일	임면구분	년 월 일	임면구분	
포 상 내 역	년 월 일	포상내용	년 월 일	포상내용	
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마을이장 성명 : (서명 또는 인)			본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읍·면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 이장재직 사실확인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성 별	남 / 여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읍·면 ○○ 마을			
	재직 기간	년	월	일부터	일 현재까지
용도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위와 같이 재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읍·면장 (인)

수 수 료
남해군 재증명 등 수수료 장수 조례 에 따름

남해군 규칙 제1108호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를 “「남해군 공유재  
산 관리 조례」” 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의” 를 “남해군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제2조제3항 중 “또는 용도변경·용도 폐지” 를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로 한  
다.

제3조제2항 중 “소관에” 를 “소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관에” 를  
“소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소관재산” 을 “소관 재산” 으로 한다.

제5조 중 “제4조 제2항” 을 “제4조제2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직 성  
명” 을 “직·성명” 으로 한다.

제6조 중 “개소” 를 “장소” 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보고 하여야” 를 “보고하여야” 로 한다.

제11조 중 “제61조” 를 “(이하 "조례"라 한다)제61조”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부채납” 을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 사용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변경 내용” 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매각신청)” 을 “(매각신청 및 분할납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유재산 매수신청서 및 분할납부 신청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29호서식)
2. 공유재산 사용료·매각대금·대부료·변상금·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

제14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20호서식” 으로 한다.

제16조 중 “필요한 것이 있을” 을 “필요할”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로 한다.

제19조 중 “호에 의” 를 “호의” 로 하고 “재산” 을 “공유재산” 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취득 및 처분등” 을 “취득 및 처분 등” 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등기수속등)” 을 “(등기수속 등)” 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받아야” 를 “거쳐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등기등록” 을 “등기·등록” 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 을 “공유재산 관리대장”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실·과·소 및 직속기관” 을 “실·과·단 및 직속기관, 사업소” 로,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각호의” 를 “각 호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등기부등본
3. 도면

제23조제1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28조 중 “제22조” 를 “제36조” 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을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검토하여야” 를 “검토 처리하여야” 로 한다.

제32조의2 중 “·한 의견서 및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를 “대한 의견서” 로, “각호과” 를 “각 호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별지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29 및 30을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0호 서식] (제27조 관련)

##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 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 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본 군에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후 부담한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에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동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 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군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에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 군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이행보증보험 제출) 사용인이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여 본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어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군의 해석에 따른다.

[별지 제29호서식] (제13조 관련)

## 공 유 재 산 매 수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	용도	대부자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재산의 매수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 동의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8항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감정가 고액 등)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측량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수 수 료
없 음		없 음

[별지 제30호서식] (제13조 관련)

공 유 재 산 [ ( )사용료( )매각대금  
( )대부료( )변 상 금 ] 분 할 납 부 신 청 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재 산 의 표 시			신청 면적 (m <sup>2</sup> )	신청 사유	분납방법	비고
소 재 지	지목	지적 (m <sup>2</sup> )				
					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	
					년/월 회 분납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및 제38조 또는 제60조에 따라  
 위 재산의 [ ( )사용료 ( )매각대금  
( )대부료 ( )변 상 금 ]을(를) 분할납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없 음

수 수 료
없 음

남해군 규칙 제1109호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6년 9월 23일

남 해 군 수

##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를 “의 시행에” 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남해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담당 업무 팀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단장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단 물품업무 담당자

제2조제1항제2호 중 “주사” 를 “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과장

물품출납원 - 주무담당 팀장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 담당자

제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 을 “제1항” 으로, “본청에 있어서는군수가,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장” 을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각 관서 및 의회에서는 각각 그 관서의 장” 으로 한다.

제3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4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5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6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날인함으로써행한다.” 를 “날인함으로써행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를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청구 및 출급증에의거” 를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로 한다.

제10조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입증기, 기타에 대하여” 를 “수입증기 등에 대해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를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물품중” 을 “물품 중” 으로, “대하여” 를 “대해서” 로, “의한” 을 “따른” 으로, “물품관리관에게즉시” 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 를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의한” 을 “따른” 으로,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를 “제16조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를 “제1항에 따라” 로, “의거” 를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한다.” 를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로 한다.

제15조 중 “요하지” 를 “필요로 하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으로 한다.

제16조 중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를 “본청 또는 각 관서, 의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의장, 읍면장” 을 “직속기관·사업소의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 으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제17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각호” 를 “각 호” 로 한다.

제18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을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20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6-71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 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스포츠로264번길 17-5 외 23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 별 도 열 람 )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변경사유
(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 별 도 열 람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055-860-3472~3474)에 문의 또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4. 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 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시유
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영지리 943-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봉화로 631번길 36-52	20080427	봉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445-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429	2008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3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무림리 10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등면 무림로 79	2008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무림(숲속마을)의 일구에서 출구까지 연결되는 중앙도로임을 반영
4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21, 21-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서부로 1535-11	20080427	창선면의 서쪽해안을 연결하는 도로임을 반영
5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리 1272	경상남도 남해읍 스포츠로 264번길 17-5	20080427	스포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123-25, 산122-1, 산123-29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302-8	20080427	고려 충선왕때 개칭한 창선의 옛 지명에서 유래
7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42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155	20080427	행정구역명을 이용 마을 앞의 모습이 거문고와 닮았다 하여 금송이라 불렀으나 이후 쉽고 부르기가 좋게 금송이라 고쳤다고 함
8	경상남도 남해군 고흥면 도마리 471	경상남도 남해군 고흥면 남해대로 3332번길 37-30	20080427	남해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3,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슬리 177-5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강진로 266-18	20080427	남해본섬과 창신도 사이에 자리한 강진만과 절한 해안도로임을 반영
10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32-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등부대로 1340번길 84	2008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4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1435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양화길로 62	20080427	양화리를 이용 마을 주변에 버드나무 꽃(양화)이 피어 있고, 금자가 들어가는 다섯 군데의 산이 있다하여 유래
1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직정리 264-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921-42	2008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흥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13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478-1, 1478-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668번길 90	20080427	남서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산253-1, 산253-4, 114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6-2	2008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5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산253-1, 114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6-1	2008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6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산253-1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6-3	2008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7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평신리 산253-1, 1151-2, 1151-3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남면로 1536-4	20080427	남면의 중심도로임을 반영 남해의 가장 남쪽에 있다. 하여 신라 신문왕때부터 남면이라 불렀다 함
18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599-1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등부대로 1662번길 75	20080427	동부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6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51-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남서대로 1477	20080427	국도 77호선 및 지방도 1024호선으로서, 이동면에서 남면, 서면을 거쳐 고흥면으로 연결되며 남해의 남서부해안 연결도로임을 반영
20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361-1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남해대로 296	2008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21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신진리 1414-7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1486-8	20080702	남해군의 중심도로
22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삼신리 256, 260-1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흥신로 171번길 46	20081023	창신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7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3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리 896-1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평천로 51번길 83-12	20100915	평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4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564-6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21번나길 14-47	20100915	망운로 21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두 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남해군 고시 제2016-73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화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광역 상수도관 관매달기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1
6. 점용면적 : 10.4㎡
7. 점용기간 : 2016. 08. 29.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16-74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삼화천)
2. 성 명 : 남해군수(상하수도사업소)
3. 주 소 : 경상남도 남해군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광역 상수도관 관매달기
5. 점용위치 : 남해군 삼동면 봉화리 2156-29
6. 점용면적 : 3.8㎡
7. 점용기간 : 2016. 08. 29. ~ 영구

남해군 고시 제2016-75호

## 남해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 고시

「연안관리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남해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 계획을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6일

### 남 해 군 수

#### 1. 계획의 개요

가. 수립근거: 「연안관리법」 제9조제1항

나.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1)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연안 및 해양의 계획적 관리 필요성 증대
  - 연안의 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의 조화와 계획적 관리가 사회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부상
- 2) 제1차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후 연안관리 여건변화 반영
  - 제1차 지역계획수립 후 여건변화 반영, 환경보전과 개발 및 기후변화와 재해대응이 필요
- 3) 신 연안관리제도 시행체계 구축 및 연안관리 기본정책 방향 마련
  - 연안해역을 4개 용도로 구분, 기능구, 자연재해관리목표제 적용방안

다. 계획의 범위

- 1) 연안해역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바닷가)와 영해의 외측 한계선까지의 사이
- 2) 연안육역
  - 무인도서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항만·어항·산업단지 는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으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을 말함

라. 공간적 범위

행정구역	연안면적	육역면적	해역면적
남해군	569.42km <sup>2</sup>	139.66km <sup>2</sup>	429.76km <sup>2</sup>

2. 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전략

가. 기본방향

- 1) 비전 : 살고 싶고 찾아오는 명품연안
- 2) 목표
  - 연안공간 이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연안생산성 향상
  - 해양생태자원의 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연안 조성
  - 자연 및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연안의 가치 제고
  - 다양한 연안이용에 따른 이해상충의 조정체계 강화

나. 연안관리 추진전략 도출

- 1) 신 연안관리제도의 적용
  -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 연안용도해역의 지정
- 2) 생태계 건강성 및 연안경관 증진
  - 연안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 연안생태계의 보전적 관리수단 적용
  - 연안지역 경관관리기반 조성
- 3) 기후변화 및 재해대응강화
  - 기후변화 적응 도시계획 및 건축규정 개선
  - 연안침식 모니터링 및 방지대책 수립
  - 친환경적인 연안개발
- 4) 연안 거버넌스 구축
  - 지역민의 연안관리 참여
- 5) 연안관리 실행력 강화
  -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 연안관리체계 강화

3. 계획의 주요내용

가. 연안용도해역 및 연안해역 기능구 설정

- 1) 연안용도해역

- 가) 연안해역을 자연환경, 이용개발현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보전·이용·개발수요, 연안관리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안용도해역으로 지정
- 나) 연안용도해역은 연안해역에 따른 해당 기능구 및 지정의제에 따라 지정
- 다) 용도해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관리연안해역으로 지정하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관리방향 및 용도와 기능을 분류

2) 연안용도해역의 종류

가) 이용연안해역

- 이용 또는 개발이 확정 혹은 예상되는 해역
- 해양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해역
  - 항만구, 항로구, 어항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광물자원구, 해중문화시설구

나) 특수연안해역

- 군사시설 및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해양의 환경 및 생태계가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해역
  - 해양수질관리구, 해양조사구, 재해관리구, 군사시설구, 산업시설구, 해양환경복원구

다) 보전연안해역

- 연안환경 및 자원의 보호, 해양문화의 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해역
  -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생태보호구, 경관보호구, 공원구, 어장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라) 관리연안해역

- 연안해역 중 이용, 특수, 보전연안해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해역
- 둘 이상에 해당되어 용도 구분이 곤란한 해역

3) 남해군 연안해역 기능구 지정 현황

권역구분		면적(km <sup>2</sup>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	429.76	429.76	100.0	신설
이용 연안	항만구	-	5.577	5.577	1.3	
	어항구	-	1.827	1.827	0.4	
	항로구	-	82.323	82.323	19.2	
	해수욕장구	-	0.887	0.887	0.2	
보존 연안	수산생물자원보호구	-	141,894	141,894	33.0	
	해양생태보호구	-	1.505	1.505	0.4	
	경관보호구	-	5.369	5.369	1.3	
	공원구	-	28.968	28.968	6.7	
	어장구	-	38.402	38.402	8.9	
특수연안	해양수질관리구	-	4.882	4.882	1.1	
관리연안		-	118.126	118.126	27.5	

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

1) 자연해안관리목표제 관리대상

○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며, 관리대상은 관할연안을 바닷가, 해안선, 조간대로 구분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를 정하고 일정수준의 자연해안을 유지

2) 자연해안관리 지역목표(안)

구분				기준년도 현황①	수요조사		지역목표(안) ②	증감 (②-①)
					개발수요	보전수요		
해안선 총 길이(m)				326,196	-	-	326,196	-
인공해안 길이(m)				165,322	-	-	165,935	761
자연 해안	바닷가	면적	m <sup>2</sup>	931,056	2,255	-	928,801	(-)2,255
			%	100.0	0.2	-	99.8	0.2
	해안선	길이	m	160,874	716	-	160,158	(-)716
			%	100.0	0.4	-	99.6	0.5
	조간대	면적	m <sup>2</sup>	21,912,745	30,673	-	21,882,072	(-)30,673
			%	100.0	0.1	-	99.9	0.1

4. 참고사항

○ 남해군 제2차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전체 내용 및 도면 등은 남해군청(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남해군 고시 제2016-76 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6항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1. 하 천 명 : 지방하천(다천천)
2. 성 명 : 남해군수
3. 주 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4. 점용목적 : 광역 상수도관 매설
5. 점용위치 :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1434
6. 점용면적 : 15.9㎡
7. 점용기간 : 2016. 9. 12.~영구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639호

어업권 면허처분 사항 및 어업권 포기 신고사항 공고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양식어업 면허처분 및 어업권 포기 신고수리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 양식어업면허 처분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451호	패류양식 (바닥식)	창선 서대	50,000	2016. 8. 12. 2026. 8. 11.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	오○섭 외2명 (박○겸, 박○자)	대체개발 (어장이설)

○ 양식어업권 포기신고 수리사항

면허번호	어업의종류 (어업방법)	양식물	어장 위치	면허 면적 (㎡)	면허기간	어업권자		비고
						주소	성명	
남해양식 제400호	패류양식 (바닥식)	새꼬막	창선 가인	83,000	2013. 8. 8 2023. 8. 7 (10년)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	오○섭외 2명 (박○겸, 박○자)	대체개발 (어장이설)

남해군 공고 제2016-642호

##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6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근거와 위원회의 심의사항 명시
  - 나. 조례의 문장 등을 쉽고 간결하게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설치 근거 명시(안 제1조)
  - 나.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군수 자문 사항을 「지역보건법」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개정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09. 0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참조 :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68-803/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차산리 645-1)

남해군 보건소(전화 055-860-8702, 팩스 055-860-879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에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보건소 보건행정팀(860-87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끝.

##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를 “「지역보건법」 제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심의·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3항 중 “사회단체등의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제4항의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로 한다.

제4조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로 한다.

제6조제2항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를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로 한다.

제8조 중 “규정한 사항외에”를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u>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조정</u>한다.</p> <p>1~4. &lt;생략&gt;</p> <p>5.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u>군인건강증진에 관한 사항</u></p>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u>군수의 자문에 응</u>한다.</p> <p>1.<u>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p> <p>2.<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p> <p>3.<u>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u></p> <p>4.그 밖에 군수가 <u>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u>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이 조례는 ----- -----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u>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p> <p>제2조(기능)①----- <u>심</u> <u>의</u>한다.</p> <p>1~4. &lt;현행과 같음&gt;</p> <p>5.<u>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u></p> <p>6.<u>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u></p> <p>7.<u>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 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u></p> <p>8.그 밖에 군수가 <u>군민건강증진 및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lt;삭제&gt;</p>

제3조(구성)

①~② <생략>

③위원은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  
시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

④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임기)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제6조(회의)① <생략>

②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  
----- 풍부한 사람 중에서 -----

④-----,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 및 지역보건의료업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임기)-----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제6조① <생략>

②-----  
-----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8조(운영세칙)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  
-----.

## 【 관계 법령 】

###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657호

##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2. 제정이유  
  - 떨어뜨기 등 용어 정비, 조례 내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2조 인용 조문 수정
  - 나. 제6조 배치되는 항목 삭제
  - 다.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떨어뜨기 개정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2) 팩스 : 055-860-3737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 (전화:055-860-314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를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리행정” 을 “리 행정” 으로, “참여케” 를 “참여하게” 로,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리 개발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리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리지역” 을 “리 지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해조정” 을 “이해 조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복지 후생” 을 “문화·복지·후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호 중 “리방위 및 예비군” 을 “리 방위 및 예비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읍면장, 리장” 을 “읍·면장, 이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 을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면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장이” 를 “읍·면장이” 로, “읍면장이” 를 “읍·면장이” 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비집행 상황” 을 “사업비 집행상황”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하며” 를 “보고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회계년도” 를 “군 회계연도”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리행정</u>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u>참여케</u>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u>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제2조(기능) <u>위원회</u>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리지역</u> 개발에 관한 사항</li> <li>2. 주민의 <u>이해조정</u>에 관한 사항</li> <li>3. 주민의 <u>문화복지 후생</u>에 관한 사항</li> <li>4. (생 략)</li> <li>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항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li> <li>6. <u>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u>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li> </ol>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u>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 ⑥ (생 략)</p> <p>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u>읍면장이</u>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u>읍면장이</u> 보궐 위촉한다.</p>	<p><u>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리 행정</u>———— ———— <u>참여하게</u> ————— ———— <u>리 개발위원회</u> ————— .</p> <p>제2조(기능) <u>리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리 지역</u> —————</li> <li>2. ————— <u>이해 조정</u>—————</li> <li>3. ————— <u>문화복지 · 후생</u>—————</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li> <li>6. <u>리 방위 및 예비군</u> —————</li> <li>7. ————— <u>읍 · 면장, 이장</u>—————</li> </ol> <p>제3조(구성) ① ————— ————— <u>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u>과 <u>읍 · 면장</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u>읍 · 면장이</u> ————— ————— ————— ————— <u>읍 · 면장이</u> ————— .</p>

남 해 군 공 보

2016년 9월 23일

제 565 호 (85)

②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① (생 략)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생 략)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생 략)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사업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사업비 집행상황 \_\_\_\_\_  
-----.

제8조(감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보고하여야 하며 \_\_\_\_\_  
-----.

제9조(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 회계연도 -----.

제11조(보고) ① \_\_\_\_\_  
\_\_\_\_\_ 읍·면장 \_\_\_\_\_  
-.

② \_\_\_\_\_  
\_\_\_\_\_ 경우에는 \_\_\_\_\_ 읍·면장 \_\_\_\_\_  
-----.

남해군 공고 제2016-659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지급대상 변경,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생의 선발 기준 명시,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 가.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 나.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함
  - 다. 제4조 장학생 선발시 우선 순위 기준 신설함
  - 라. 제8조 이장 해임된 경우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신설함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2) 팩스 : 055-860-3737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 (전화:055-860-31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의견 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를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이장”을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장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중 “읍면장은 제2조 규정”을 “읍·면장은 제2조”로 하고,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로 하며, “매학년”을 “매 학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이장 근속 기간
2. 학생의 성적
3. 관내 학교 학생

②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군당”을 “남해군”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을 각각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를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제8조제2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군수”를 “즉시 군수”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u>중·고등학생</u>에게 지급하는 <u>이장자녀 장학금</u> (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 <u>고등학생</u>                      _____ <u>장학</u>  <u>금</u> _____                      _____.</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u>이장</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품행이 단정하고 <u>재학중 학과 성적</u>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p> <p>2.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u>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 <u>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u>                      _____                      _____</p> <p>--</p> <p>2.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장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장학금</u>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u>매학년</u>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p>	<p>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                      ----- <u>이장자녀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u>-----                      ----- <u>매 학년</u>-----.</p>
<p>제4조(선발) 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u>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u>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u>확정</u>하여야 한다.</p>	<p>제4조(선발)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u>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u>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u>다음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선발</u>하여야 한다.</p> <p>1. <u>이장 근속 기간</u>                      2. <u>학생의 성적</u></p>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이장 1명당 선발 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3. 관내 학교 학생

②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남해군 -----

제6조(장학금액) -----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 -----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각 호 -----  
-----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② 읍·면장 -----  
----- 즉시 군수 -----  
-----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남해군 공고 제2016-660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장학금 지급시 입금대상자 명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제2호(장학생 추천서) 변경이 요구됨

3. 주요내용

- 가. 제5조 장학금 지급시 입금대상자를 명시함
- 나.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제2호(장학생 추천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2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2) 팩스 : 055-860-3737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 (전화:055-860-31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를 “이장의 계좌에 입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한다.”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p>	<p>제1조(장학금의 지급) ----- ----- 이장의 계좌에 입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한다.</p>

<별지 제2호서식>

# 장 학생 추천서

- 1. 주 소 :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3. 성 명 :                      (한자 :                      )
- 4. 생년월일 :                      (만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1. 최종학기 학습 성적 석차 (전체 명중 등) 2. 특기사항 : 3. 금년도 타장학금 수혜(예정)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 장학금액 :                      원	1. 학습태도 : 2. 기타사항 :

년              월              일

학 교 장(직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16-667호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상위법령 규정에 의거 심의회 설치·운영안 수정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55-860-3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제 출 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하여야” 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부군수가 되고” 를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로 한다.

제11조제8항 중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를 “사항은 군수가”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심의회 설치·운영)</p> <p>① (생 략)</p> <p>② _____위원의 30 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p> <p>③ ---- 부군수가 되고 -----.</p> <p>④ ~ ⑦ (생 략)</p> <p>⑧ ----- 세부사항은 심의회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p>	<p>제11조(심의회 설치·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u>초과하지 아니하</u>도록 노력 하여야 ----.</p> <p>③ ---- 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p> <p>④ ~ ⑦ (현행 같음)</p> <p>⑧ _____ 사항은 군수가 -----.</p>

남해군 공고 제2016-668호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4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등 인용법령 및 용어를 정비하고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무·기능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변경 수정하여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을 「민원처리에관한법률」로 제명 변경
- 나. 상위법령 규정에 의거 위원회 구성안 수정
- 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임무·기능 수정 및 신설
- 라. 위원회 심의의결 결정효력안 삭제
- 마. 실무종합심의회 명칭을 민원실무심의회로 변경함
- 바.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등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

합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01, 팩스 055-860-3700~1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팀(전화 055-860-3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자 치 법 규 명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민원사무처리법령」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를  
“「민원처리법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로 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를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하고, “민원처리 주관부서 및 관련 부서의 실·과·단·소장, 외부법률전문가 등으로” 를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이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회부 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 각 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주관” 을 “주무” 로 하고 “민원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를 “민원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실무종합심의회” 를 “민원실무심의회”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종합심의회” 를 “민원실무심의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민원사무전결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를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담당주사가” 를 “처리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u>」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p>	<p><b>제1조(목적)</b> ----- 「<u>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u>」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p>
<p><b>제3조(구성)</b>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lt;단서조항 신설&gt;</p> <p>② 위원장은 <u>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 처리주관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실.과. 단. 소장, 외부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u></p> <p>③ (생략)</p> <p>④ <u>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외부법률전문가 외에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u></p> <p>⑤ (생략)</p>	<p><b>제3조(구성)</b> ① -----</p> <p>----- .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위원장은 <u>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u></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lt;삭 제&gt;</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5조(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b>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li> <li>2.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거부처분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li> <li>3.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li> </ol>	<p><b>제5조(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b>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li> <li>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li> <li>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li> </ol>

4. 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 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른 이의 신청

6.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7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신 설>

**제8조(심의의결 결정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

- 1. 위법 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 수용
- 2.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해결책 마련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주관부서의 실.과. 단.소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5.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사항

6.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회부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8조 <삭 제>**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민원주무부서의 \_\_\_\_\_, ---- 민원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실무종합심의회)의 구성 ① -----  
----- 실무종합심의회-----.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민원사무전결권자와 동일하게 하고, 간사는 처리주무부서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실무 담당자가 되며, 위원은 관련담당주사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관련부서의 실.과.단.소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민원사무 결재권자가 군수일 경우에는 실무위원장을 부군수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13조(민원실무심의회)의 구성 ① -----  
----- 민원실무심의회-----.

② (현행과 같음)

③ -----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되고, --- 처리주무부서의 담당팀장이 --, -----  
-----  
-----  
-----  
-----  
-----  
-----.

④ ~ ⑥ (현행과 같음)

남해군 공고 제2016-680호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조성 재원을 정함(안 제2조)
  - 나. 조성된 기금의 사용용도(안 제3조)
  - 다. 기금운용 계획(안 제4조)
  - 라. 기금결산(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16년 9월 20일까지(20일간)
  -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lux0812@korea.kr)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생년월일·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남해군(도시건축과)

- 주 소 : (우52425)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전 화 : 055)860-3074 FAX : 055)860-373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남해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를 위하여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업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남해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예산 업무부서의 장, 옥외광고 업무부서의 장, 문화관광 업무부서의 장
2. 옥외광고·도시계획·건축·디자인·경관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경험 또는 학식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 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
- 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685호

## 2016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남해군 지방재정(2015년 회계연도에 대한 재정운영상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6년 8월 31일

남 해 군 수

### ●● 공 시 내 용

→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포함)
- 재무제표
- 채권관리 현황
- 기금운용 현황
-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지역통합재정통계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정보
- 제36조의2 및 제53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정운영상황개요서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그 이행현황
-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 지방보조금 관련 현황(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등)

→ 그밖에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시행령 제68조)

- 재정분석·진단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영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특수공시 : 11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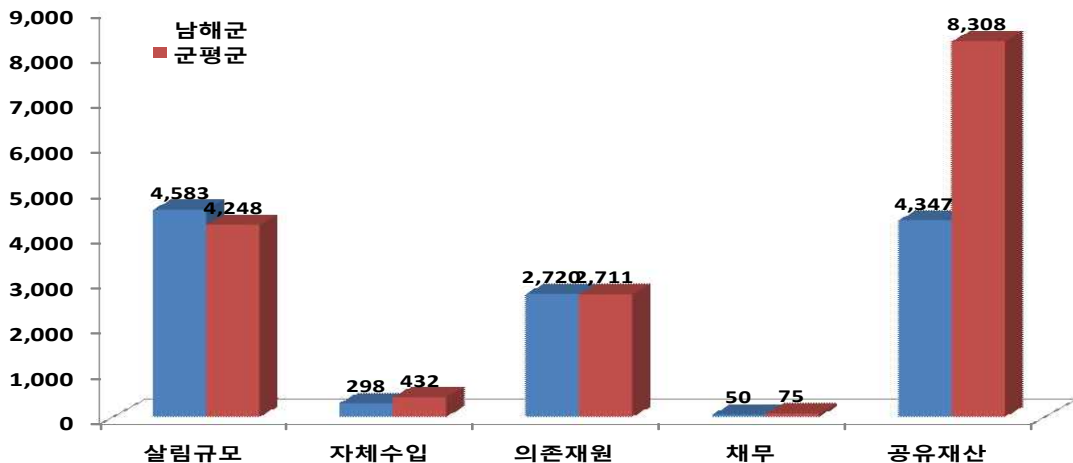
붙 임 : 2016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 1부.



# 2016년 남해군 재정공시(결산)

- ◆ 우리 남해군의 2015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의존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583억원으로, 전년대비 25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98억원이며, 군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29만원입니다.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720억원입니다.
  -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5억원입니다.
- ◆ 2015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50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09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15년도에 미조면 미조리 860번지 외 585건 (288억원)을 취득 하고, 창선면 진동리 1068-1번지 외 146건(74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4,34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우리 군의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군-(3) 20개 군(기초자치단체 유형 구분 기준)

##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단위:억원)



- ◆ 우리 군의 2015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 (4,248억원) 보다 77억원이 많습니다.
  -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 (432억원)보다 134억원이 적으며, 의존재원은 동종단체 평균액 (2,711억원)보다 9억원이 많습니다.
  - 채무액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 (75억원)보다 25억원 적고, 군의 1인당 채무액은 동종단체 평균액 (184천원)보다 75천원 적습니다.
  -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액 (8,308억원)과 비교하여 3,961억원이 적습니다.
  
- ◆ 우리 군의 '15년도 최종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9.62%이며 (전국 평균 51.9%, 유사지방단체 평균 17.64%),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4.65% (전국 평균 76.3%, 유사 지방단체 평균 63.44%)입니다.
  
- ◆ 우리 군의 2015년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 (순세계잉여금 포함)는 82억원의 흑자입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단체 평균 보다 살림규모는 많으나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재원은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낮으므로 건전재정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세수증대를 위한 자체노력과 지속적인 교부세, 보조금 등 중앙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군 홈페이지 (<http://www.namhae.go.kr>,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답 당 자 : 기획감사실 오수택(055-860-3064)

남해군 공고 제2016-697호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9월 6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의 개정에 따라 ‘기금은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금의 달성기한을 조례에 설정함으로써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제5항을 신설한다.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9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 주민복지실장(전화 : 055-860-3847, FAX : 055-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실 여성보육팀(전화: 055-860-38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생 략) <u>&lt;신 설&gt;</u>	제2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2017년부터 2021년까지)으로 한다.</u>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남해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제20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운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③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21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법 제40조에 따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 국제교류
  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4.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지원
  5.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공고 제2016-704호

##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9월 8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절한 설치와 장애인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이용편리를 증진시키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중이용 건축물이 면적에 관계 없이 사전점검 대상시설로 되어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단서 규정 삭제(안 제3조)

나. 사전점검요원의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5조)

다. 편의시설 설치 완화를 “남해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 사전점검 대상시설로 보완하고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

### 4. 개정 조례 안 : 덧붙임

###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주민복지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의견 및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남해군 주민복지실장(전화 : 055-860-3842, FAX : 055-860-388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주민복지실 아동장애인팀(전화: 055-860-38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사전점검 대상시설(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제1항 중 “임명한다.”를 “당연직으로 구성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임명요원”을 “당연직요원”으로 하고 “건축업무 담당공무원”을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기술요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임명요원”을 “당연직요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임명된”을 “당연직”으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임명요원”을 “당연직요원”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조치의 완화) 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그 적용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은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되, 사전 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조치의 완화) <삭제>

## 【관 계 법 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9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①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 등을 통하여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등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이하 이 조에서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안전 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상시설의 용도와 주변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기준을 승인할 때에는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2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관련 적합성 확인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영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과 제2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은 적합성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7.29.]

남해군 공고 제2016-712호

###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2일

### 남 해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명)	이일우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93번길
소하천명		향도천		
공사 (점용·사용)개요	위치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434번지(297번지 인근)		
	면적	5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16. 9. 8. ~ 2017. 9. 7.		
	목적 및 사유	단독주택 진입로를 위한 박스교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남해군 공고 제2016-722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장학금 지급시 입금대상자 명시,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제2호(장학생 추천서) 변경이 요구됨
3. 주요내용  
가. 제5조 장학금 지급시 입금대상자를 명시함  
나. 동조례 시행규칙 별지제2호(장학생 추천서) 변경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4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2) 팩스 : 055-860-3737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전화:055-860-31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를 “이장의 계좌에 입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p>	<p>제1조(장학금의 지급) ----- ----- 이장의 계좌에 입금하고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지급통지한다.</p>

<별지 제2호서식>

# 장 학생 추천서

- 1. 주 소 :
- 2. 학 교 명 :                      학교              학년                      학과
- 3. 성 명 :                      (한자 :                      )
- 4. 생년월일 :                      (만              세)

위 사람은 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어 이에 추천합니다.

성              적	품              행
1. 최종학기 학습 성적 석차 (전체 명중 등) 2. 특기사항 : 3. 금년도 타장학금 수혜(예정)여부 (있음, 없음) - 장학금명 : - 장학금액 :                      원	1. 학습태도 :  2. 기타사항 :

년              월              일

학 교 장(직인)

남 해 군 수 귀하

## [관련 법규]

### 1.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남해군 공고 제2016-723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지급대상 변경, 장학생의 자격과 장학생의 선발 기준 명시,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신설
3. 주요내용  
가. 제1조 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나.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명확하게 함  
다. 제4조 장학생 선발시 우선 순위 기준 신설함  
라. 제8조 이장 해임된 경우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신설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4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 2) 팩스 : 055-860-3737
-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 (전화:055-860-314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를 “장학금”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이장”을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 중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을 “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장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 중 “읍면장은 제2조 규정”을 “읍·면장은 제2조”로 하고, “장학금”을 “이장자녀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로 하며, “매학년”을 “매 학년”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

1. 이장 근속 기간
2. 학생의 성적
3. 관내 학교 학생

②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 중 “군당”을 “남해군”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공납금”을 각각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를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제8조제2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하고, “군수”를 “즉시 군수”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u>중·고등학생</u>에게 지급하는 <u>이장자녀 장학금</u> (<u>이하"장학금"이라 한다</u>)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목적) _____                      _____ <u>고등학생</u> _____ <u>장학금</u>                      _____                      -----.</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u>이장</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u>품행이 단정하고 재학중 학과 성적이 과목별 평정결과 성취도 「우」 이상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u></p> <p>2.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u>이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u>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p> <p>1. ----- <u>재학 중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u>                      _____</p> <p>2.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이장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제3조(추천) <u>읍면장은 제2조</u>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장학금</u>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u>매학년</u>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p>	<p>제3조(추천) <u>읍·면장은 제2조</u>-----                      ----- <u>이장자녀 장학금 (이하"장학금"이라 한다)</u>----- <u>매 학년</u>-----                      -----.</p>
<p>제4조(선발) ① <u>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u></p>	<p>제4조(선발) ① <u>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장학생으로 추천된 사람의 수가 제5조에 따른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야 한다.</u></p> <p>1. <u>이장 근속 기간</u>                      2. <u>학생의 성적</u>                      3. <u>관내 학교 학생</u></p>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이장 1명당 선발 자녀수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 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학생의 선발을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 남해군 -----.

제6조(장학금액) -----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 ----- 공납금(수업료 및 학교운영 지원비)-----.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 분기별로 공납금 납입기한 경과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지급의 정지) ① ----- 각호 -----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3.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

② 읍·면장 ----- 주시 군수 -----.

----- 이 경우 군수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 제>

## [관련 법규]

### 1.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724호

##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2. 제정이유  
  - 떨어뜨기 등 용어 정비, 조례 내 배치되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2조 인용 조문 수정
  - 나. 제6조 배치되는 항목 삭제
  - 다. 그 밖에 용어 정비 및 떨어뜨기 개정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0월 4일 까지 남해군수에게 [별지서식1]을 이용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남해군수(행정과장)

2) 팩스 : 055-860-3737

3) 남해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행정과 교류협력팀 (전화:055-860-3142)에 문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를 “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리행정” 을 “리 행정” 으로, “참여케” 를 “참여하게” 로, “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리 개발위원회”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를 “리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리지역” 을 “리 지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해조정” 을 “이해 조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복지 후생” 을 “문화·복지·후생”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

제2조제6호 중 “리방위 및 예비군” 을 “리 방위 및 예비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읍면장, 리장” 을 “읍·면장, 이장”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과 읍면장” 을 “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과 읍·면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읍면장이” 를 “읍·면장이” 로, “읍면장이” 를 “읍·면장이” 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사업비집행 상황” 을 “사업비 집행상황” 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고하여야하며” 를 “보고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군회계년도” 를 “군 회계연도” 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읍면장” 을 “읍·면장” 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남해군 리개발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리행정</u>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u>참여</u>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u>리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를 둔다.</p> <p>제2조(기능) <u>위원회</u>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리지역</u> 개발에 관한 사항</li> <li>2. 주민의 <u>이해조정</u>에 관한 사항</li> <li>3. 주민의 <u>문화복지 후생</u>에 관한 사항</li> <li>4. (생 략)</li> <li>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7항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li> <li>6. <u>리방위 및 예비군 운영 협조</u>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u>읍면장, 리장</u>이 부의한 사항</li> </ol> <p>제3조(구성) ① <u>위원회</u>는 <u>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새마을 청소년회장</u>과 <u>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p> <p>② ~ ⑥ (생 략)</p> <p>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u>읍면장이 위촉하는</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따라 <u>읍면장이 보궐</u> 위촉한다.</p>	<p><u>남해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u></p> <p>제1조(목적) <u>리 행정</u>———— ———— <u>참여</u>케 ————— ———— <u>리 개발위원</u> <u>회</u>-----.</p> <p>제2조(기능) <u>리 개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리 지역</u> -----</li> <li>2. ----- <u>이해 조정</u>-----</li> <li>3. ----- <u>문화복지·후생</u>-----</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li> <li>6. <u>리 방위 및 예비군</u> ----- --</li> <li>7. ----- <u>읍·면장, 이장</u>-----</li> </ol> <p>제3조(구성) ① ————— ----- <u>리 대장 새마을 청년회장</u> <u>과 읍·면장</u>—————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등의 임기) ① <u>읍·면장이</u> ----- ————— ————— ----- <u>읍·면장이</u> -----.</p>

② (생 략)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생 략)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 ① (생 략)

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 ① (생 략)

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한 차례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① (생 략)

② 회계연도는 군회계년도에 따른다.

제11조(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사업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사업비 집행상황 \_\_\_\_\_  
-----.

제8조(감사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보고하여야 하며 \_\_\_\_\_  
-----.

제9조(회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군 회계연도 -----.

제11조(보고) ① \_\_\_\_\_  
\_\_\_\_\_ 읍·면장 \_\_\_\_\_  
-.

② \_\_\_\_\_  
\_\_\_\_\_ 경우에는 \_\_\_\_\_ 읍·면장 \_\_\_\_\_  
-----.

## [관련 법규]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 6호 생략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생략

### 2.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729호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조례 운영상 발생된 미비점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신설(안 제41조의3)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내의 건폐율 완화(제41조의4 신설)
  -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 완화(제41조의5 및 제46조의1 신설)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150퍼센트 이하

나. 군계획위원회의 운영상 보완 사항 신설(제55조의2)

- 제안설명 요청 등

다. 기타 남해군 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668-801,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dongak@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86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견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 견 제 출 자	성 명 (명 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 치 법 규 안 내 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 법 제3조” 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2조” 를 “법 제22조의2” 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12조제4항” 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 로 한다.

제10조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 를 “ 「지방자치법」 제124조” 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터 이하인 것

제25조제1항 중 “규칙” 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로 한다.

제31조제3항 중 “자문을” 을 “심의” 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3항” 을 “영 제84조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5항” 을 “영 제84조제6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4조제6항” 을 “영 제84조제7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4조제7항” 을 “영 제84조제8항”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84조제8항” 을 “영 제84조제9항” 으로 한다.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3(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41조의5(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 중 “영 제84조제4항”을 “영 제84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p>	<p>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 -----.</p>
<p>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군수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p>	<p>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 ----- ----- -----.</p>
<p>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법 제14조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생략)</p>	<p>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법 제1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p>	<p>제10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 ----- 「지방자치법」 제124조 -----</p>

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생략)

②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총 공사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결정한다.

② (생략)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생략)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창고시설·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②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③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터 이하인 것

제25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십의를 -----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 항-----

1. ~ 6. (현행과 같음)

② 영 제84조제6항-----

-----  
1. ~ 5.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4조제7항-----

·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 1. ~ 3. (생 략)

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  
-----  
-----

④ 영 제84조제8항

- 1. ~ 3. (현행과 같음)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의3(학교의 건폐율)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영 제84조제6항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1조의4(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41조의5(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4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

-----  
-----  
-----  
-----

<신 설>

제46조의2(개발구역에서의 용적율) 「기업도  
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  
정된 지역의 용적율은 해당 용도지역 안  
에서의 용적율에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 설>

제55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위원회 위  
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  
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요청할 때에는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  
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  
나 새로 부담을 추가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해당 심의결과를 민간사업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732호

##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3일

남 해 군 수

###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반영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신설(안 제5조 신설)

-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 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로 신설.

나.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6조 정비)

-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 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로 정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dongak@korea.kr

5.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도시건축과 도시계획팀(860-341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남해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종전의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5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p> <p>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군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에 관한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에서 「남해군 계획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p> <p>제7조 &lt;현행 제6조와 같음&gt;</p>

남해군 공고 제2016-735호

###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관광진흥법 시행령」(2015.11.18.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이 자치법규 제정에 관한 참고사항

나.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2) 연락처 : (전화)055-860-8603, (팩스)055-860-3748, (e-mail) kjj0321@korea.kr

붙 임 :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하 “법”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2조제3호 중 “법”을 “「관광진흥법」”으로, “「농어촌 정비법」 제2조16호라목”을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으로 하며,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조(정의) (생 략)</u></p> <p>1. (생 략)</p> <p>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p> <p>3. “숙박시설”이란 <u>법</u>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 정비법」 <u>제2조16호</u>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u>제10조(시행규칙) (생 략)</u></p>	<p><u>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u></p> <p>1. (현행과 같음)</p> <p>2.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p> <p>3.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공중 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농어촌 정비법」 <u>제2조제16호</u>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시설을 말한다.</p> <p>4.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p> <p><u>제10조(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u>  <u>「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에 따라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u></p> <p><u>제1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p>

## 관 련 법 규

### □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3.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3.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관광정책과) 044-203-2818

문화체육관광부(관광산업과) 044-203-2834

**제5조(등록기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 및 농어촌휴양시설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10.29., 2013.10.31.>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경우 별표 1 제3호가목(1)에도 불구하고 같은 단지 안에 20실 이상 객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전문휴양업 중 온천장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온천수를 이용한 대중목욕시설이 있을 것
  - 나. 정구장·탁구장·볼링장·홀터·미니골프장·배드민턴장·롤러스케이팅장·보트장 등의 레크리에이션 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거나 제2조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 시설이 있을 것
3. 전문휴양업 중 농어촌휴양시설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2)(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또는 관광농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관광객의 관람이나 휴식에 이용될 수 있는 특용작물·나무 등을 재배하거나 어류·희귀동물 등을 기르고 있을 것

[별표 1] <개정 2016.3.22.>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3. 휴양콘도미니엄업

가. 객실

- (1) 같은 단지 안에 객실이 30실 이상일 것
- (2) 관광객의 취사·체류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매점 등

매점이나 간이매장이 있을 것. 다만, 여러 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문화체육공간

공연장·전시관·미술관·박물관·수영장·테니스장·축구장·농구장, 그 밖에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문화체육공간을 1개소 이상 갖출 것. 다만, 수개의 동으로 단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안에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분양 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6.2.12.] [법률 제13475호, 2015.8.11., 일부개정]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09.2.6.]

남해군 공고 제2016-738호

###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

각종 어린이 대상 성범죄로부터 어린이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남해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취약지역 내 『방법 및 어린이 안전 CCTV 신설』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19일

### 남 해 군 수

1. 예고명 :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2.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아동복지법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주요내용

가. 설치목적

도시공원 및 취약지역 내 어린이대상 각종 강력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 및 어린이안전 CCTV 신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나. 행정예고 기간 : 2016.09.19 ~ 2016.10.09(21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 남해군 홈페이지(<http://www.namhae.go.kr>)

※ 남해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라. 설치장소 : 아래 참조
- 마. 촬영범위 및 시간 : 카메라 설치지 100M 이내, 연중 24시간
- 바. 운영관리 : 남해군 행정과
- 사. 설치목적 : 방법(어린이보호 포함), 교통(주·정차단속), 하천감시, 산불방지, 환경감시 등
  -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 : 붙임참조

4. 의견 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해군 행정과로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16. 09.19 ~ 2016.10.9(21일간)
- 나. 제출(문의)처 : 남해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055 - 860 - 3131)
-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중 택일(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 우편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우 52425)
  - FAX : 055-860-3737
- 라. 기재사항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서**

사 업 명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남해군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방법 및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

순번	현장명	주 소	CCTV 신설		비 고
			회전형	고정형	
1	이순신순국공원	고현면 차면리 717	3		
2	남해충렬사	설천면 노량리 349	1	1	
3	노량소공원	설천면 덕신리 1295-1	1	1	
4	봉황산공원	남해읍 아산리 산144-7번지	1	1	
5	앵강소공원	이동면 무림리 253	1	1	
6	미조등대소공원	미조면 미조리 104-19	1	2	
7	보물섬아이나라	남해읍 서변리 234		3	
8	관음포이충무공 전몰유허	고현면 차면리 107	1		
9	창선삼천포대교 입구	창선면 대벽리 산9-39		4	
10	경남은행 앞	남해읍 북변리 287-8		2	
11	중앙사거리	남해읍 북변리 147-12		4	
12	시외버스터미널 출구	남해읍 북변리 470-7		1	
13	남해대교 입구	설천면 노량리 산 34-11	1		
14	남해읍시장사거리	남해읍 북변리 248-12		1	
15	우리카 앞	남해읍 남변리 280-10	1	1	
16	태우인쇄소 앞	남해읍 북변리 97-11		2	
17	이동면 상설시장입구	이동면 무림리 1140	1	1	
18	창선교 입구	삼동면 지족리 291-7	1		
19	유림오거리	남해읍 북변리 476-2		3	
20	파크에비뉴 1차 앞	남해읍 북변리 264-4		2	
21	남해읍사무소 실외화장실 앞	남해읍 북변리 157		2	
22	휴먼시아 정문 인근	남해읍 남변리 478-13		1	
23	남해대학 후문	남해읍 남변리 338-5		2	
24	설천보건지소 인근 삼거리	설천면 금음리 1029-1	1	2	
25	남해병원 앞	남해읍 차산리 784-3	1	2	
26	성현마을 입구	이동면 무림리 산 232-4	1	1	
27	천동마을 인근 삼거리	고현면 포상리 979-2	1	1	
28	현촌마을 인근 삼거리	서면 중현리 25-3	1	1	
29	오용마을 입구	창선면 오용리 산 187	1	1	
30	금전공원	상주면 상주리 1540-1	1	1	
31	상주중학교 인근	상주면 상주리 591-2	1	1	
32	상주수변공원	상주면 상주리 1248-1	1		
33	물건소공원	삼동면 물건리 297-2	1	2	
34	남산공원_놀이터	남해읍 평리 1238-1	1	2	
35	남산공원_충혼탑 앞	남해읍 서변리 211-1	1		
36	스포츠파크_호텔앞 놀이터	서면 서상리 1182-10	1	2	
37	스포츠파크_축구장옆 놀이터	서면 서상리 1182-1	1		
38	남해초등학교 정문	남해읍 북변리 141-7		1	
39	해양초등학교 정문	남해읍 남변리 461-3		1	



# 남 해 군 공 보

2016년 9월 23일

제 565 호 (183)

40	해양초등학교 후문	남해읍 서변리 182-2		1	
41	설천초등학교 후문	설천면 남양리 71	1	2	
42	미조북향매립지	미조면 미조리 671-8	1	2	
43	남해유치원 정문	남해읍 서변리 263-2		1	
44	에덴선교어린이집	남면 당항리 1533	1	3	
45	창선어린이집	창선면 상신리 123	1	2	
46	빛초롱어린이집	이동면 석평리 51-1	1	3	
47	하늘빛어린이집	삼동면 지족리 144	1	3	
48	햇살어린이집	남해읍 서변리 323-3	1	4	
49	미조아이어린이집	미조면 미조리 669	1	3	
50	남해군청 정문	남해읍 서변리 24-3	1		
51	효자문삼거리	남해읍 서변리 145-19	1		
52	중앙사거리	남해읍 북변리 158-40	1		
53	유림오거리	남해읍 북변리 284-1	1		
54	시장사거리	남해읍 북변리 250-21	1		
55	삼동면사무소 앞	삼동면 지족리 258-3	1		
56	남해약초홍보관 옥상	이동면 신전리 733-5	1		
57	내산저수지 입구	삼동면 봉화리 산 470-13	1		
58	사포마을회관 옥상	창선면 광천리 441-15	1		
59	화천가동보(동천시장옆)	삼동면 봉화리 1128	1		
60	상주은모래비치_바다파출소	상주면 상주리 2182-2	1		
61	송정솔바람해변_샤워장	미조면 송정리 1175-6	1		
62	설리해수욕장_삼거리	미조면송정리 970-7	1		
63	미조남향_명이네식당 앞	미조면 미조리 168-44	1	1	
64	남해군청 내	남해읍 서변리 24-1		11	
65	국민체육센터_주차장	남해읍 북변리 79-1	3		
66	미조복지회관_사무실앞	미조면 미조리 104-9		3	
67	남해등기소 입구	남해읍 북변리 235-2		2	
68	작은영화관 주변	남해읍 아산리 357-1		5	
합 계			52	99	

알 림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18호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부당한 규제 규정을 개선하여 지역투자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를 친화적으로 정비하며 기업입지와 투자여건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정만족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문 개정(제25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전화055-860-3324, 팩스860-3751, e-mail : streethall@korea.kr

# 의 건 제 출 서

1. 자치법규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조례 제 호

##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 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 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남해군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6-19호

##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용어의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정의에 관한 조문 개정(제2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13, 남해군 남해읍 에코파크길 65-10 남해군청 상하수도사업소
- 연락처 : 전화055-860-3324, 팩스860-3751, e-mail : streethall@korea.kr

#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 화 번 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